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3일, 백승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승아의원)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의 일몰기한을 2024년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지방세 세목에 연동하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형태의 특별시·광역시·도세임.

이 중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1996년 지방세분 교육세로 신설되

어 2000년말까지 담배소비세액의 40%로 부과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2001년 지방세분 교육세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고 세율이 50%로 인상되면서 일몰기한이 2003년말까지 3년 연장되었고, 다시 일몰기한이 2005년말까지 2년, 2010년말까지 5년, 2015년말까지 5년 연장되었음. 또한 2016년에는 세율이 43.99%로 인하되며 일몰기한이 2018년말까지 3년 연장되었고, 다시 일몰기한이 2021년말까지 3년, 2024년말까지 3년 연장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개정안은 상기 일몰기한을 다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인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시·도 등 간에 다음과 같은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시·도교육청 등은 일몰기한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① 최근 국제수입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예산 대비 2023년 10.4조원, 2024년 4.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②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국가, 시·도 및 시·군·구의 비용 분담 규정이 2024년말 기준 일몰되어 매년 약 1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 후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7년 이후 일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반면, 시·도 등은 일몰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① 학령인구 감소는 2027년이 아니라 이미 2000년대 후반 본격화되어 2024년 학령인

구(524.8만명)가 2005년 792.3만명 대비 33.8%,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분이 신설된 1996년 862.4만명 대비 39.1% 각각 감소되어 있고,

② 1996년 이후 29년간 이미 일몰기한이 7차례 연장되며 관성화되어 일몰기한을 설정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원칙대로 2024년말 일몰기한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고로, 정부는 관계 부처간 이견을 절충하여 동 일몰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의안번호 22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